

세무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2011년 12월 pp.395~420
한국세무학회

국제회계기준의 판단적 용어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

김노창** · 권성수*** · 심태섭****

<요 약>

국제회계기준에서 원칙중심 회계규정 중 회계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하나로서 인식단계의 ‘가능성’ 판단 규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에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발생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용어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는 명확한 실무적인 지침이 없이 감사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실제 이를 적용하는 감사인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다양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감사인이나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는 규정 중에서 확률적 판단을 요하는 규정에 대하여 감사인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높은 경우, 낮은 경우)과 해당기업의 기업성과(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에 따라 그 판단이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발부채 주식공시여부와 이연법인세 자산의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대형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실험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회계감사인의 우발부채 공시확률은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회계감사인은 감리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당기순이익인 경우 우발부채를 보다 많이 인식하며, 기업성과가 당기순이익인 상황에서는 감리가능성이 높을 때 우발부채를 보다 많이 인식한다. 반면에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감리가능성 및 기업성과와 관련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에서 감사인의 판단을 요하는 용어를 단순화하여 기준서간에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발생가능성 등 관련 용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정의하되, 필요한 경우 확률적 판단 지침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원칙중심, 확률적 판단규정, 우발부채, 이연법인세자산

* 논문 심사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편집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ilulis79@uos.ac.kr, 010-3390-9883, 주저자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sskwon@kasb.or.kr, 02-2259-0157, 교신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tsshim@uos.ac.kr, 02-2210-5386,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11년 11월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I. 서 론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서 원칙중심의 회계기준(principle-based standards)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은 경영진의 판단에 크게 의존한 회계처리를 요구한다. 즉 재무정보 작성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재무정보를 작성할 때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하도록 판단하여야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가장 잘 확보된다는 것이다.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은 경영진의 판단에 크게 의존한 회계처리를 요구하지만, 그러한 판단 과정에 개입되기 쉬운 경영진 재량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와 파악을 위해 경영진의 판단 근거에 대한 정보를 주식 공시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IFRS에서 원칙중심 회계규정 중 회계처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하나로서 인식단계의 ‘가능성’ 판단 규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IFRS은 자산과 부채의 인식 조건으로서 ‘가능성이 높은(Probable)’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자산과 부채의 인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경영진의 판단은 자산이나 부채가 인식되느냐 인식되지 않느냐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 즉 가능성이 높으면 인식하고 높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는 확률인식기준(Probability Recognition Criterion)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재무제표 항목의 인식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IFRS의 확률인식기준은 회계감사인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그 발생가능성에 대해 회계감사인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FRS와 같은 원칙중심의 기준에서는 회계관련 사건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회계감사인과 경영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도 그 발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감사인간, 혹은 경영자간에서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기에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해치는 등 회계정보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발생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IFRS의 규정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과 감사대상기업의 성과에 따라 그 판단에 차이가 있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IFRS에서는 확률적 판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최종적인 판단을 경영진 혹은 회계감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서는 동일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IFRS의 경우 비영어권 국가의 언어적 의미론적인 다양성에 따른 다양한 회계처리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선 IFRS에 규정된 여러 확률적 판단기준에 대하여 실제 회계감사인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감사인간의 판단의 일치성(consensus)

이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여러 감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감독기관의 감리 등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IFRS에서 감사인이나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는 규정 중에서 확률적 판단을 요하는 규정에 대하여 감사인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감독기관의 감리 가능성(높은 경우, 낮은 경우)과 해당기업의 기업성과(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에 따라 그 판단이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발부채 주석공시여부와 이연법인세 자산의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대형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실험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회계감사인의 우발부채 공시확률은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회계감사인은 감리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당기순이익인 경우 우발부채를 보다 많이 인식하며, 기업성과가 당기순이익인 상황에서는 감리가능성이 높을 때 우발부채를 보다 많이 인식한다. 반면에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감리가능성 및 기업성과와 관련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IFRS에서 감사인의 판단을 요하는 용어를 단순화하여 기준서간에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연구가설 및 실험절차에 대해서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V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기존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FRS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특징을 설명하고, 확률판단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1.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특징

‘원칙중심(principle-based)’ IFRS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대비되는 ‘규정중심(rule-based)’의 회계기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이나 우리나라의 기존 기업회계기준 등은 규정중심의 규정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정중심의 기준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리스 분류 기준에서 내용연수나 현재가치와 같은 계량적 수치를 기준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매각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이나 경영자는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물론 규정중심의 회계기준은 해당 규정만을 형식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Skipper(2003)는 미국 재무보고기준이 회계기준에 대한 추가설명 및 기준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규정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원칙중심의 재무보고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규정중심 시스템은 규정의 존재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비기능적 재무정보를 산출하려는 태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구보고서(SEC Study 2003)에 의하면, 규정중심 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 ① 처리 여부 등을 가르는 경계선 규정 존재(BRIGHT LINE TESTS)
- ② 원칙에 대한 다수 예외 존재
- ③ 방대한 세부실무지침의 필요성

반대로 ‘원칙중심(principle-based)’은 IFRS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 일부 차이점이 존재한다. IFRS은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경영진이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정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 ① 규정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여(Relies on judgement) 판단하고 선택한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계기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기준 내에서 예외 규정을 지양한다(No exceptions).
- ③ 회계기준 내에서 목적과 핵심원칙(Core principles)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 ④ 회계기준서 간 일관성을 유지한다(No inconsistencies among Standards).
- ⑤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규정하며(Tied to conceptual framework), 개념체계와 다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한다.
- ⑥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한다(Minimum guidance).

예를 들어, 재무제표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및 측정에 대해서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여부와 측정에 의한 측정과 세부적인 회계처리는 경영진의 판단에 의존한다. 반면에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관련 주석 공시 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특성으로 SEC는 ① 실무지침 및 해석 최소화, ② 전문가적 판단

요구 증가, ③ 개념체계의 중요성 증가, ④ 기준적용 예외 감소, ⑤ 비교가능성 감소, ⑥ 소송대처 수단 감소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은 거래 설계 등을 통해 특정 규칙의 회피를 위한 조작과 같은 실무상 왜곡이 쉽지 않게 될 것이다(Tweedie, 2008). 회계감사인들이 보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특징은 다음에서 엿볼 수 있다.

- ① 경제적 실질의 충실한 표현
- ② 명료성과 투명성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충족
- ③ 명확한 개념체계와의 일관성
- ④ 하나의 회계분야에 대해 적절히 정의된 적용범위에 기초
- ⑤ 명백하고 간결하며 쉬운 표현
- ⑥ 합리적 판단을 사용하도록 허용

2. 확률판단관련 선행연구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라는 말로 표현하는 방식(verbal assessment, 이하 구술적 접근방법)과 “오류 발생 가능성이 30%임”라고 규정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이하 숫자에 의한 접근방식)간에는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¹⁾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구술적 접근방식이 숫자에 의한 접근방식에 비해 개인이 받아들이기에 더 쉽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Budescu and Wallsten 1995 ; Olson and

- 1) 확률판단과 관련하여 국제기후협회(IPCC)가 발표한 Uncertainty Guidance Note 보고서도 의미있는 과제를 다루고 있다. IPCC Uncertainty Guidance Note 보고서는 회계기준에서도 사용되는 확률적 판단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공통된 개념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서가 필요한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음의 <표 1>는 관련 용어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표이다.

<표 1> Likelihood Scale

용어(Terminology)	발생가능성(Likelihood of the occurrence)
Virtually certain	> 99% probability of occurrence
Very likely	> 90% probability
Likely	> 66% probability
About as likely as not	33 to 66% probability
Unlikely	< 33% probability
Very unlikely	< 10% probability
Exceptionally unlikely	< 1% probability

Budescu 1997 ; Zimmer 1983, 1984). 또한 구술적 접근방식은 숫자에 의한 접근방식보다 추가적인 비수치상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고, 차별적인 구절은 동일한 수치의 확률을 전달하거나, 더 혹은 덜 설득력이 있거나 다른 강조점을 전달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Moxey and Sanford 2000 ; Teigen and Brun 1995, 1999, 2000). 또한 확률에 대해 제시된 서술적 문구는 수치로 제시된 경우에 비해 개개인의 해석이 통일되지 않고 모호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Budescu et al. 1988 ; Wallsten 1990).

Piercey(2009)에 의하면 심리학 이론에서는 두 방식(수치와 구술로 제시된)에 의한 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예측하고 있으나, 판단 및 의사결정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Budescu and Wallsten, 1995). 즉, 두 방식간의 차이가 있음을 예측하는 심리학 이론과 실증연구가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Piercey(2009)는 이 두 방식 간에 실증적인 차이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관련 업무(task)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즉 업무가 정확성(accuracy)을 파악하여야 하는 업무는 두 평가방법의 의사결정 결과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하여 다른 목적의 과업, 대표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²⁾는 두 평가방법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³⁾ 구체적으로 Piercey(2009)는 목적을 가진 의도가 있는 실험과업에서 개개인이 숫자 혹은 구술로 제시된 확률에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회계상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목적을 가진 의도가 있는 실험과업에서는 실험참여자는 수치로 제시된 경우보다는 구술적인 표현으로 제시된 경우에, 편의(bias)를 가진 판단을 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Cuccia et al.(1995)은 규정의 개정이 전문가의 공격적인 보고의사결정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인가를 실험을 통해 분석했다. 규정은 전문가의 유인을 조작하기 위해 세법규정(tax context)을 이용했다. 우선 전문가들이 공격적인 보고의사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모호한 규정이 가지는 허용범위(latitude)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실험했다. 실험에서 참여자들에게 공격적인 보고유인(reporting incentive)이나 보수적인 보고유인 중 하나를 주었고, 모호하고 단어로 표현된 기준점(threshold)을 가진 규정을 주었다. 실험결과 공격적인 보고유인을 가진 참여자들이 보수적인 보고유인을 가진 참여자들보다 규정의 해석을 넓게 하였고, 해석범위는 공격적인 보고의사결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한 것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 모호하고 말로 표현된 기준점(threshold) 대신에 보다 엄격하고 숫자로 표현된 기준점으로 대체하였다. 전문가가 애매모호한 규정의 허용범위(latitude)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을 통

2) 이는 “motivated reasoning task”로 표기되었다.

3) 예를 들면, 정확한 예측을 하여야 하는 과업(accurate assesment)에서는 두 방법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이에 비해 의도적으로 낙관적 예측을 해야 하는 과업(optimistic assesment)에서는 두 방법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 보상받는지 여부를 실험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격적인 보고유인을 주었고, 앞 실험에서 사용된 규정보다 엄격한 규정을 주었다. 실험결과 보다 엄격한 규정이 주어진 참여자들은 공격적인 보고의사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해석할 때 가능한 넓게 해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보상효과(*incentive effect*)는 엄격한 규정하에서도 덜 엄격한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애매모호한 단어로 표현된 세법규정을 분명한 숫자로 표현된 세법규정으로 변경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의 공격적인 보고의사결정에 차이가 없었다.

Kadous & Mercer(2011)는 749명의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명확한 회계기준과 불명확한 회계기준에서 배심원이 회계감사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실험하였다. 연구결과 불명확한 기준에서만 경영자가 덜 공격적인 재무보고를 하거나 산업기준에서 벗어나는 재무보고를 하는 경우 배심원단은 회계감사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영자가 공격적인 재무보고를 하는 경우 배심원단은 회계감사인에게 더 적은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기준의 명확성과 경영자의 재무보고 성향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책임의 정도가 달라짐을 밝혀냈다.

Psaros and Trotman(2004)은 연결의사결정에 회계기준의 명확성이 회계감사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하였다. 연구결과 원칙중심 회계원칙 하에서는 회계감사인은 “지배력(*capacity to control*)”이라는 연결관련 규정을 공격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시켰다. 또한 규정중심 회계원칙 하에서는 회계감사인이 오히려 더욱 공격적인 재무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회계기준이 효율적인지, 회계기준의 원칙 차이가 회계감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Mergenthaler Jr.(2009)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회계기준의 특성이 이익조정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회계기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1) 처리 여부 등을 가르는 경계선 규정의 존재여부, 2)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의 정도, 3) 구체적인 해석 지침서의 양 4) 기준서에 사용된 총 단어수이다. 즉 이 네 가지 기준을 보다 많이 만족시키는 경우는 규정중심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보다 덜 만족시키는 경우는 원칙중심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기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정중심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이익조정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SEC의 집행소송(*enforcement actions*)을 통한 적발확률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규정중심의 회계기준에서 제시한 명확한 회계지침이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의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계방법을 선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해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는 확률판단을 요하는 규정이 경영자나 회계감사인의 확률판단 의사결정에 차이를 유도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반대의 연구결과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확률판단을 요하는 규정이 감리가능성이나 기업의 재무상황 등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감사인의 확률판단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본 연구의 기여점

본 연구는 “발생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IFRS의 규정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IFRS도입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관련된 기업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상황을 이용한 실험방법을 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IFRS에서 규정된 확률적 판단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IFRS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IFRS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IFRS에서 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실제 회계감사인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지 그 확률판단성향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회계감사인은 발생가능성에 대한 확률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찾거나 실무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져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의 설계

1. 연구가설

임석식 외(2009)의 연구에서도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도입된 이후 회계감사인들은 동일한 회계처리에 대해 감사인별로 상이한 해석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기준 제정기관이 상이한 해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회계감사인이 회계기준 확률판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IFRS에 규정된 확률판단 규정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우발부채 주석공시와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에 대한 규정으로 국한하였다.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경우 확률적 판단⁴⁾과 관련된 가장 중

4) 우발부채 주석공시와 관련한 확률적 판단(probable)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는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 자원의 유출 또는 기타 사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의무의 존재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

요한 항목이고,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시 과세소득발생가능성⁵⁾에 대한 것은 이연법인세의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이를 선택하였다. 즉 우발부채 주석공시여부를 결정하는 가능성 규정의 판단과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여부를 결정하는 과세소득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회계감사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확률적 판단 규정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성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처리변수(treatment variable)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이다. 최근 IFRS의 도입을 전후로 감독기관의 보다 강화된 감독을 통하여 IFRS의 정착을 이루고자 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확률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파악하였다. IFRS가 도입된 이후의 강화된 규제기관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⁶⁾ 두 번째 처리변수로는 해당기업의 기업성과이다. 기업성과는 회사가 순이익 상태인지 순손실 상태인지로 구분하였다. 현실적으로 감사인은 해당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설문지는 두 가지 독립변수(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 상황별로 무작위 추출한 집단별로 확률판단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⁷⁾과 과세소득발생가능성의 인식확률을 종속변수로 두었다.

제한다. 다만,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probable”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른 효과는 아래와 같다.

	0%	50%	80%	100%
발생가능성				
현행	미인식	우발부채 공시		충당부채 인식
제1037호	미인식	우발부채 공시	충당부채 인식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시 과세소득발생가능성에 대한 확률적 판단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즉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시 과세소득이 발생가능성 판단 기준이 거의 확실(80%)에서 높은(50% 초과)으로 완화되었다.
- 올해부터 모든 상장회사들이 회계처리를 할 때 의무적으로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해야 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IFRS의 조기정착을 돕고 재무공시 충실화를 위한 점검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IFRS 전면시행 첫해를 맞아 초기혼란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IFRS 최초 적용 시 의무적용사항과 주석공시 등 취약부분에 대한 신속점검을 강화하는 등 IFRS 시대에 대비한 회계감독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조세일보, 2011.1.13 “IFRS본격시행, 회계감독방식 어떻게 바뀌나” 기사 중 발췌).
- 금융감독원이 K-IFRS(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 대상인 122개 상장법인의 1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30%가 우발채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 10곳 중 3곳은 우발채

먼저 <실험 1>에서는 감리가능성(감리가능성이 높음과 낮음)과 재무적 곤경여부(기업성과가 당기순손실인지 당기순이익인지)가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회사에 대한 감리가능성이 높을수록 회계감사인의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의 재무상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담당 회계감사인의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는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우발부채 주석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은 감리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

<연구가설 2> 우발부채 주석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은 기업성과에 따라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실험 2>에서는 감리가능성과 기업의 성과가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확률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회사에 대한 감리가능성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확률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의 기업성과에 따라 담당 회계감사인의 우발부채 인식확률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연구가설 3>과 <연구가설 4>는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3>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시 과세소득발생가능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은 감리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

<연구가설 4>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시 과세소득발생가능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은 기업성과에 따라 차이가 없다.

2. 연구모형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판단적 용어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확률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실험 과업은 감사인의 입장에서 특정 목적을 의도하고자 하는 회계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목적에 가진 의도가 있는 실험과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첫 번째 실험을 위한 처리변수는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이며, 종속변수는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이다.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먼저 감리가능성은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두 가지 수준으로 하였다. 감리기관의 감리가 회계감사인의 감사품질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감리가능성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Lennox and Pittman, 2010 ; Hermanson et al., 2007). 기업성과는 당기순손실과 당기순이익의 두 가지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자는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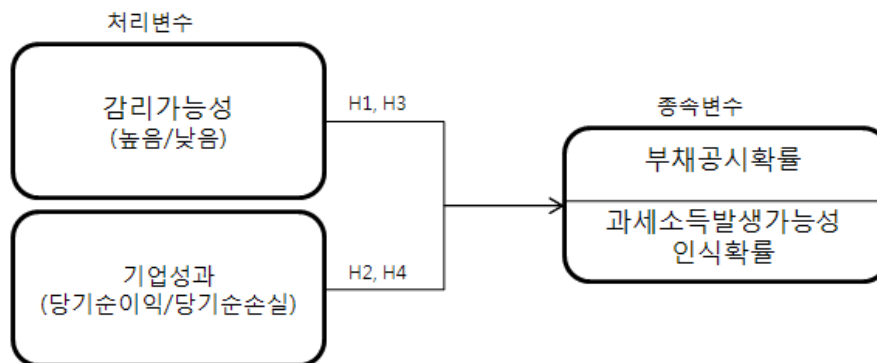
무 항목에 중요한 우발채무를 표시하지 않거나 종속 회사의 우발채무를 기록하지 않았다(매일경제, 2011.8.1. “상장사 30% IFRS에 우발채무 기재 안해” 기사 중 발췌).

이익을 증가시킬 유인이 있으며, 회계감사인은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불명확한 판단 규정을 이용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다(Gibbins et al., 2001). 또한 감리가능성과 기업 성과의 상호작용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상호작용효과가 주식공시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실험을 위해 본 연구의 처리변수는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이며, 종속변수는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다.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증연구에서 이연법인세 정보에는 기업의 이익조정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연법인세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데 감사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Phillips et al., 2003). 이를 위해 감리가능성은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두 가지 수준으로 하였고, 기업성과는 당기순손실과 당기순이익의 두 가지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의 상호작용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상호작용효과가 인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앞에 언급한 본 연구의 가설과 변수의 측정을 근거로 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3. 실험절차

본 연구에서는 우발부채와 과세소득발생가능성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에서 대형회계법인의 감사인들이 어떠한 확률적 판단을 하는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두 개의 처리변수(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를 집단간 요인(between-subjects factors)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설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설계

기업성과	감리가능성	낮음	높음
	당기순손실	G11	G21
	당기순이익	G12	G2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형태는 처리변수인 감리가능성(높음/낮음)과 기업성과(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로 구성되어 있어 총 4가지 형태의 설문지를 마련하였다(2*2, G11, G12, G21, G22). 응답자는 각 상황에서 우발부채와 과세소득발생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예측하는 과업을 수행하였다(구체적인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을 참조).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Big 4 회계법인에 각각 60부씩 배포(총 240부)하였으며 이중 총 20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5.00%).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설문에 들어가기 전에 실험참여자들에게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 사례의 내용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이 실제 사례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응답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 중 실험질문에 대해 응답이 누락된 실험참여자(1명)와 처리변수에 대한 적절성평가(manipulation-check) 문항에서 오답을 응답한 실험참여자를 모두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155매(유효율 : 75.98%)였다. 이상의 실험실시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실험실시현황

(단위 : 명)

성과	감리가능성	실험집단	총 응답자	응답누락 ^{주1)}	적절성 평가 ^{주2)}	유효수
당기순손실	낮음	G11	50	(-)3	(-) 7	40
	높음	G21	50	(-)1	(-) 5	44
당기순이익	낮음	G12	53	(-)4	(-)12	37
	높음	G22	51	(-)1	(-)16	34
계		4집단	204	(-)9	(-)40	155

주1) 응답이 누락된 실험참여자(1명)를 분석대상에 제거함.

주2) 처리변수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통해 오답을 응답한 모든 실험참여자를 분석대상에서 제거함.

IV. 자료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다음의 <표 4>에서는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에 응답한 실험참여자는 남성(N=113, 72.90%)이 여성(N=42, 27.10%)에 비해 높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으며, 연령은 30세에서 39세까지의 응답자(N=110, 70.9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를 Big 4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삼일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영, 삼정, 안건회계법인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감사경력은 5년 미만, 5-9년 그리고 10년 이상을 보유한 실험참여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실험참여자들의 감사경험의 차이로 인한 편의(bias)는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⁸⁾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13	72.90	연령	30세 미만	27	17.41
	여성	42	27.10		30-39세	110	70.96
소속 회계 법인	삼일	50	32.25		40-49세	18	11.61
	삼정	34	21.93	감사 경력	5년 미만	56	36.12
	한영	39	25.16		5-9년	52	33.54
	안건	32	20.64		10년 이상	47	30.32

주) 설문항목상 누락된 응답은 통계량 계산에서 제거함.

우선, <표 5>와 <표 6>에서는 각 실험집단의 응답(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 및 과세소득발생가능성 인식확률)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먼저 <표 5>를 살펴보면, 각 집단별로 조작된

8) 분석에 이용된 실험참여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참여자의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Young (1985)이 제시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참여자의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으로 실험참여자가 복권을 사는 상황을 가정하여, 당첨되면 10,000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0원)으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권의 가격이 5,000원일 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몇 %이상이면 이 복권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 때 실험참여자가 응답한 당첨확률이 50% 미만이면 위험추구형, 50%면 위험중립형 그리고 50% 초과면 위험회피형 태도를 갖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표본에서 위험회피형에 속하는 회계감사인은 54.19%(N=84), 위험중립형에 속하는 실험참여자는 37.41%(N=58), 위험추구형에 속하는 실험참여자는 8.38%(N=1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위험회피형에 속하는 실험참여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위험중립형, 위험회피형의 순서로 회계감사인의 위험중립 및 위험회피 성향이 두드러졌다.

처리변수(감리가능성, 기업성과)에 따라 회계감사인들은 집단별로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감리가능성이 낮은 집단(mean=0.281)이 높은 집단(mean=0.223)에 비해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감리가능성이 높을 때 우발부채를 보다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기성과는 당기순손실(mean=0.264)일 때 보다 당기순이익(mean=0.244)일 때,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는 당기순이익이 발생시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기술통계량(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

성과	감리가능성 구분	낮음				높음				계		
		집 단	유효수 (N)	평균 ^{주)} (Mean)	표준편차 (Std. Dev.)	집 단	유효수 (N)	평균 ^{주)} (Mean)	표준편차 (Std. Dev.)	유효수 (N)	평균 ^{주)} (Mean)	표준편차 (Std. Dev.)
당기순손실	G11	40	0.260	0.206	G21	37	0.269	0.176	77	0.264	0.191	
당기순이익	G12	44	0.301	0.218	G22	34	0.172	0.147	78	0.244	0.200	
계		84	0.281	0.212		71	0.223	0.169	155	0.254	0.195	

주) 종속변수인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은 설문지에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몇% 이하이면 주석공시를 생각하시겠습니까?”라는 형태로 질문하여 평균이 낮을수록 주석공시확률이 높음을 의미함.

다음으로 <표 6>을 살펴보면, 각 집단별로 조작된 처리변수(감리가능성, 기업성과)에 따라 회계감사인들은 집단별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발생가능성 인식확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감리가능성이 높은 집단(mean=0.700)과 낮은 집단(mean=0.700)간에는 과세소득발생가능성 인식확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기성과는 당기순이익(mean=0.698)일 때와 당기순손실(mean=0.703)때가 거의 비슷하여, 당기성과의 차이는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기술통계량(과세소득발생가능성 인식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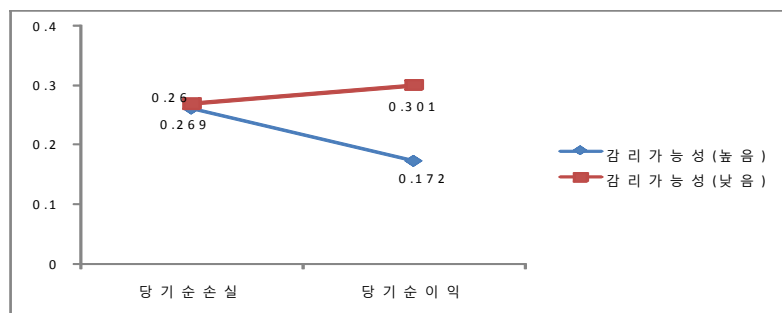
성과	감리가능성 구분	높음				낮음				계		
		집 단	유효수 (N)	평균 ^{주)} (Mean)	표준편차 (Std. Dev.)	집 단	유효수 (N)	평균 ^{주)} (Mean)	표준편차 (Std. Dev.)	유효수 (N)	평균 ^{주)} (Mean)	표준편차 (Std. Dev.)
당기순손실	G11	40	0.700	0.162	G21	37	0.705	0.140	77	0.703	0.151	
당기순이익	G12	44	0.700	0.163	G22	34	0.695	0.145	78	0.698	0.154	
계		84	0.700	0.161		71	0.700	0.141	155	0.700	0.152	

주) 종속변수인 과세소득 발생가능성확률은 설문지에서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몇%이상은 되어야 이익과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형태로 제시함.

2. 예비분석 :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

먼저 <그림 2>에서는 <표 5>의 우발부채 발생가능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결과에서 제시한 집단별 응답성향을 보여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감리가능성이 낮을 때에 비해 감리가능성이 높을 때,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기순손실인 경우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mean=0.269)와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mean=0.260)에서의 실험참여자의 의사결정에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일 때 나타난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은 감리가능성이 낮을 때(mean=0.301)때 보다 높을(mean=0.172)때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응답자인 감사인의 경우 감사대상회사가 당기순이익인 경우 감리가능성이 낮을 경우는 비교적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확률판단에 대한 감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을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이 어느 정도 억제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림 2>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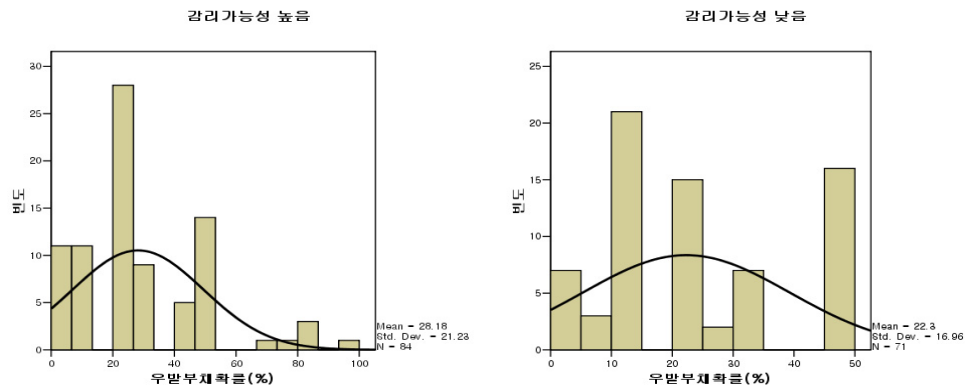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3>은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에 따른 실험참여자의 응답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패널 A]에서 보듯이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는 일정한 응답분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응답의 분포가 상당히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 우발부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은 감사인간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패널 B]에서 보듯이 감사대상 기업이 순이익인 상황에서는 감사인간의 우발부채 발생확률에 대한 판단이 감사인별로 차이가 많았다. 이에 비하여 감사대상회사가 당기순손실인 경우에는 감사인의 판단이 다른 상황보다 감사인간의 응답의 일치도(consensus)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성과가 당기순손실인 경우 회계감사인의 확률판단성향이 비슷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림 3>에 의하면 감사대상회사가 당기순손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발부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성향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성향은 동일한 우발부채에 대하여 감사인별로 다양한 판단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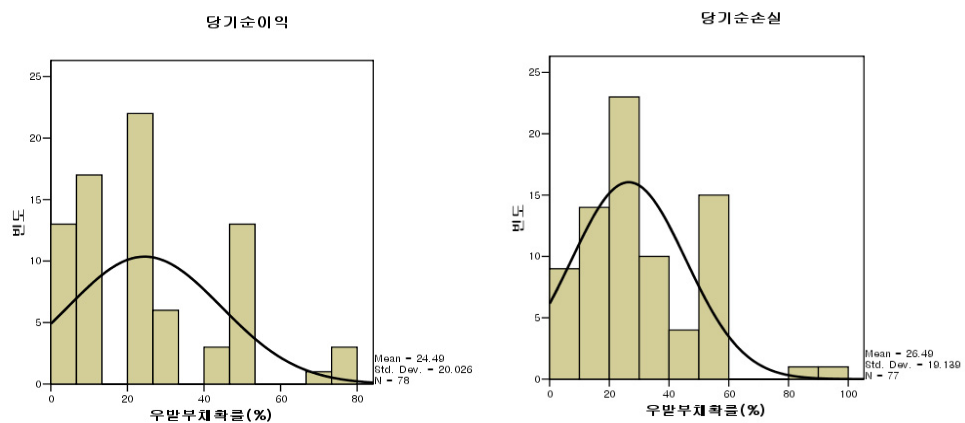
향을 미쳐 동일한 사항을 서로 다르게 재무제표에 반영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처리변수별 감사인의 주식공시확률 차이

[패널A] 감리가능성(높음, 낮음)에 따른 주식공시확률



[패널B] 기업성과(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에 따른 주식공시확률



3. <가설 1,2>의 검정 : 우발부채 주식공시확률

<가설 1> 및 <가설 2>는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가 감사인의 우발부채 주식공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이용한다. 이원분산분석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요인이 2개인 경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가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에 미치는 영향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3367.846	3	1122.615	3.054	.030
Intercept	96659.269	1	96659.269	262.941	.000
감리가능성	1378.904	1	1378.904	3.751	.055*
기업성과	312.284	1	312.284	.850	.358
감리가능성*기업성과	1836.385	1	1836.385	4.995	.027**
Error	55508.864	151	367.608		
Total	159538.000	155			
Corrected Total	58876.710	154			

a. R squared=.057(Adjusted R squared=.038)

b.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은 0-100%의 범위로 측정하였으며, 감리가능성은 감리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상황으로, 기업성과는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인 상황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분석결과,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effect)가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적이어서 분석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단순주효과검정(simple main effect test)을 실시하였다. 우선 감리가능성에 대한 단순주효과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감리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고정시킨 경우, 기업성과가 당기순이익인 경우와 당기순손실인 경우에 따라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에 차이가 있다($t_{값}=2.515$, $p_{값}=0.014$). 반면에 감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업성과가 당기순이익인 경우와 당기순손실인 경우에 따라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에 차이가 없다($t_{값}=0.875$, $p_{값}=0.384$). 즉 회계감사인은 감리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업성과를 고려하여 우발부채 인식확률을 판단하지만, 감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업성과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표 8〉 단순주효과 검정(감리가능성)

구 분		평 균	t값(p값)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	당기순이익	26.05	0.875(0.384)
	당기순손실	30.11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	당기순이익	17.21	2.515(0.014***)
	당기순손실	26.97	

a.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은 0-100%의 범위로 측정하였으며, 감리가능성은 감리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상황으로, 기업성과는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인 상황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다음으로 기업성과에 대한 단순주효과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기업성과가 당기순이익인 상황으로 고정시킨 경우,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따라 우발부채 주식공시확률에 차이가 있다($t_{값}=2.962$, $p_{값}=0.004$). 반면에 기업성과가 당기순손실인 상황으로 고정시킨 경우,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따라 우발부채 주식공시확률에 차이가 없다($t_{값}=0.210$, $p_{값}=0.834$). 즉 회계감사인은 당기순이익 상황에서는 감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발부채 주식공시확률을 판단하지만, 당기순손실인 상황에서는 감리가능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가설 1> 및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9> 단순주효과 검정(기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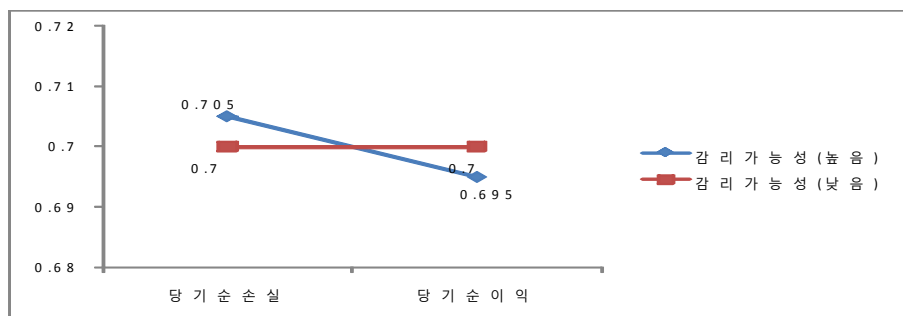
구 분		평 균	t값(p값)
당기순이익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	14.70	2.962(0.004 ^{***})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	30.10	
당기순손실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	26.90	0.210(0.834)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	26.00	

a. 우발부채 주식공시확률은 0—100%의 범위로 측정하였으며, 감리가능성은 감리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상황으로, 기업성과는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인 상황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4. 예비분석 : 과세소득발생가능성의 인식확률

다음 <그림 4>는 <표 6>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결과에서 제시한 집단별 응답성향의 차이이다. <그림 4>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인 경우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mean=0.705)와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mean=0.700)에서의 실험참여자의 인식확률에 차이가 없으며, 당기순이익인 경우에도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기순이익일 때 나타난 과세소득발생가능성 인식확률은 감리가능성이 낮을(mean=0.695)때와 높을(mean=0.700)때가 비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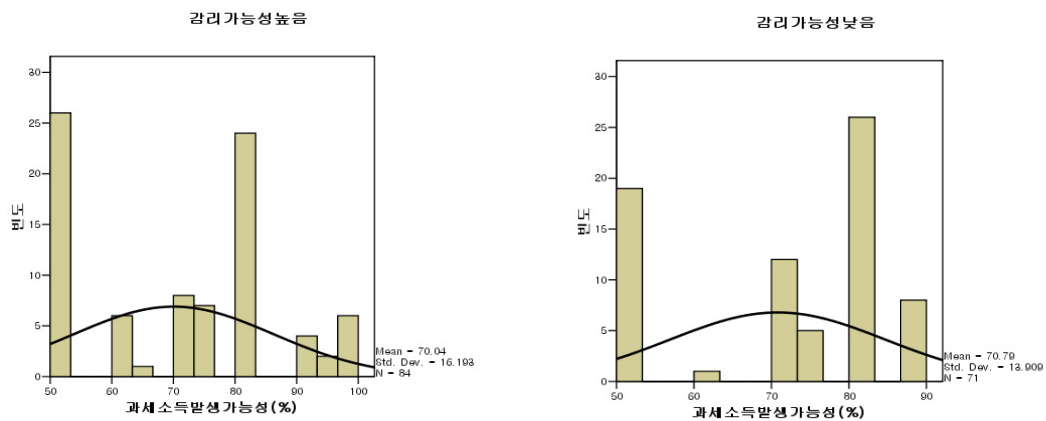
<그림 4> 과세소득발생가능성 인식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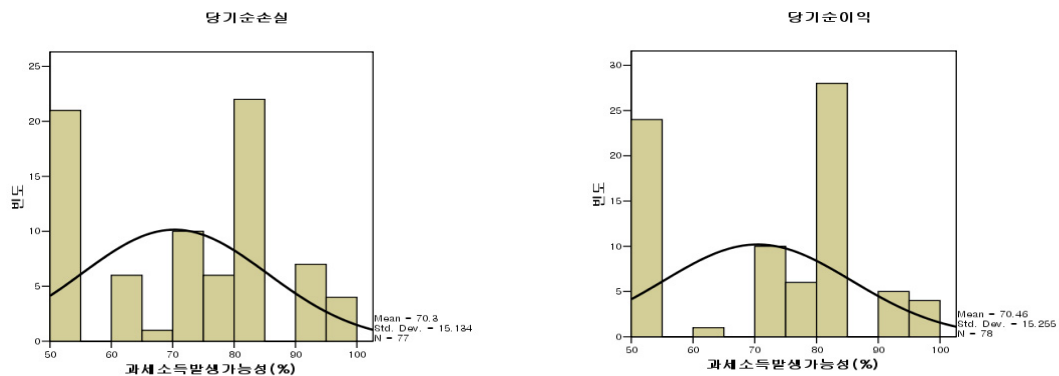
<그림 5>는 감리가능성과 기업성파에 따른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분포를 보여준다.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및 기업성파가 당기순손실인 경우와 당기순이익인 경우 모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그림 5>에 의하면 과세소득발생가능성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성향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성향은 동일한 과세소득발생가능성에 대하여 감사인별도 다양한 판단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 동일한 사항을 서로 다르게 재무제표에 반영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 처리변수별 감사인의 인식확률 차이

[패널A] 감리가능성(높음, 낮음)에 따른 인식확률



[패널B] 기업성파(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에 따른 인식확률



5. <가설 3, 4>의 검정 : 과세소득발생가능성의 인식확률

<가설 3> 및 <가설 4>는 과세소득발생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설 1,2>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실험참여자의 과세소득발생가능성 인식 확률에 대한 의사결정의 응답을 이분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가 과세소득발생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16.278	3	5.426	.0023	.995
Intercept	753740.255	1	753740.255	3176.327	.000
감리가능성	.028	1	.028	0.000	.991
기업성과	10.131	1	10.131	.850	.837
감리가능성*기업성과	7.383	1	7.389	4.995	.860
Error	35832.199	151	237.299		
Total	796609.000	155			
Corrected Total	35848.477	154			

a. R squared=.000(Adjusted R squared = -.019)

분석결과, 감리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과세소득발생가능성에 대한 확률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기업성과가 당기순손실인 경우와 당기순이익인 경우에도 확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의 상호작용변수도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는 회계감사인의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과세소득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즉 감리가능성과 당기순이익이라는 요인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과세소득발생가능성 인식확률에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가설 3> 및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두 종속변수인 우발부채의 주석공시확률과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과세소득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확률에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의 영향은 우발부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회계감사인이 자산의 인식보다 부채를 인식할 때 기업성과와 감리가능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보수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자산보다 부채의 확률인식 판단성향에 회계감사인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하에 감리가능성과 기업성도가 회계감사인의 확률적 판단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발부채 주석공시와 이연법인세인식시 과세소득발생가능성에 대하여 Big 4에 근무하는 감사인들이 실제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를 파악하였다. 설문지로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우발부채 주석공시확률은 감리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당기순이익인 경우 우발부채를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당기순이익인 상황에서는 감리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우발부채를 높게 인식하였다. 반면에 이연법인세 인식시 과세소득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감리가능성과 기업성도에 따른 인식확률에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두 실험의 연구결과 차이는 현재 IFRS의 확률인식과 관련한 판단규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확률판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 즉 확률적 판단을 요하는 규정과 관련된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한다.

첫째, 확률적 판단을 요하는 용어를 단순화하여 기준서간에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확률적 판단에 대한 용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정의하되 이에 대한 확률적 판단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확률판단에 대한 용어의 확률적 정의가 어렵다면, 적어도 그 정도에 대한 서열적 판단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측정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면, IFRS에서 그러한 확률적 판단규정을 모두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도에 대한 용어 사용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인식과 측정을 위한 확률적 판단 규정 확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과 원칙중심인 IFRS의 취지에 상충은 일어나지 않는다. 원칙중심의 규정은 경제적 실질에 대한 경영진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하도록 경계선(bright line) 규칙 제공을 지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식 측정과 관련된 확률적 판단 규정은 정확한 정도에 대한 판단의 기준(bright line)을 제시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원칙중심이라고 하여 불분명한 측정지침(gray line)을 제시한다면 판단의 비일관성과 판단의 오류 또는 자의적 판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원칙중심 IFRS에서는 감사인이나 회계감독기구도 보고된 재무정보가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의사결정인지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경영진 판단이 크게 요구되는 IFRS를 적용하는 경우 소위 재량적 발생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영진 판단에 의해 회계처리결과가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회계규정의 용어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경영진 판단에 의존하는 원칙중심의 규정과 그러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측정지침을 주는 규정은 구별하여 기준서에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체 감사인 중 Big4소속 회계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non-big4나 감사반 소속 회계사는 실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회계법인의 감사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계정보이용자 및 회계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에 실험연구의 대상을 확장하고, 국제회계기준의 표현상의 모호성과 본문과 주석공시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임석식 · 김경태 · 이영한. 2009. “K-IFRS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과 대책”. 회계저널 18권 제4호 : 127-159.
- Budescu, D. V., Weinberg, S., & Wallsten, T. S. 1988. Decisions based on numerically and verbally expressed uncertaint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14 : 281-294.
- Budescu, D. V., & Wallsten, T. S., 1995. Processing linguistic probabilities : General principles and empirical evidence. In J. Busemeyer, R. Hastie, & D. L. Medin (Eds.), Decision making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32 : 275-318.
- Cuccia, A. D., K. Hackenbrack, and M. W. Nelson. 1995. The Ability of Professional Standards to Mitigate Aggressive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70(2). 227-248.
- David Tweedie. 2008. The Empire Club of Canada Toronto, Canada.
- Gibbins, M., S. Salterio, and A. Webb, “Evidence about Auditor-Client Management Negotiation Concerning Client’s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3), 2001 : 535-564.
- Hackenbrack, Karl and Mark W. Nelson. 1996. Auditors' Incentives and Their Application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he Accounting Review* 71 (1) : 43-59.
- Hermanson, R. D., R. W. Houston, and J. C. Rice. 2007. PCAOB Inspections of Smaller CPA Firms : Initial Evidence from Inspection Reports. *Accounting Horizons* 21 : 137-152.
- IPCC,. 2005. Guidance Notes for Lead Authors of the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on Addressing Uncertainties.
- Kadous, Kathryn and Molly Mercer. 2011. Jury Verdicts Against Auditors under Precise and Imprecise Accounting Standards. Working Paper (SSRN).
- Karelitz, T. M. and D. V. Budescu. 2004. You say "Probable" and I say "likely" : Improv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ith verbal probability phrases. *Journal of Psychology : Applied* 10 (1) : 25-41.
- Lennox, C., and J. Pittman. 2010. Auditing the Auditors : Evidence on the Recent Reforms to the External Monitoring of Audit Firm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9 : 84-103.
- Mergenthaler, Richard D. 2009. Principles-Based versus Rules-Based Standards and Earning Management. Working Paper
- Moxey, L. M., and Sanford, A. J. 2000. Communicating quantities : A review of psycholinguistic evidence of how expressions determine perspectiv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4) : 237-255.
- Olson, M. J., and Budescu, D. V. 1997. Patterns of preference for numerical and verbal probabilities.

- Journal of Experimental Decision Making* 10 : 117 – 131.
- Phillips, J., M. Pincus, and S. Rego. 2003. Earnings management :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 (April) : 491 – 521.
- Piercey, M. D. 2009. Motivated reasoning and verbal vs. numerical probability assessment : Evidence from an accounting contex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8 : 330 – 341.
- Psaros, Jim and K. T. Trotman. 2004. The Impact of the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on Preparers' Judgments. *ABACUS*. 40 (1) : 76 – 93.
- Schipper, Katherine. 2003. Principles – Based Accounting Standards. *Accounting Horizons* 17(1) : 61 – 72.
- SEC. 2003. Policy Statement : Reaffirming the Status of the FASB as a Designated Private – Sector Standard Setter (April 2003).
- Teigen, K. H., and Brun, W. 1995. Yes, but it is uncertain : Direction and communicative intention of verbal probabilistic terms. *Acta Psychologica* 88 : 233 – 258.
- Teigen, K. H., and Brun, W. 1999. The directionality of verbal probability expressions : Effects on decisions, predictions, and probabilistic reason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0(2) : 155 – 190.
- Teigen, K. H., and Brun, W. 2000. Ambiguous probabilities : When does $p=0.3$ reflect a possibility, and when does it express a doubt?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 Making* 13 : 345 – 362.
- Wallsten, T. S. 1990. The costs and benefits of vague information. In R. M. Hogarth, (Ed.), *Insights in decision making : A tribute to the Hillel J. Einhorn* (pp. 28 – 43). Chicago, IL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llsten, T. S., D. V. Budescu, and R. Zwick. 1993. Comparing the calibration and coherence of numerical and verbal probability judgments. *Management Science* 39 (2) : 176 – 190.
- Zimmer, A. C. 1983. Verbal vs. numerical processing of subjective probabilities. In R. W. Scholtz (Ed.),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Amsterdam : Elsevier.
- Zimmer, A. C. 1984. A model for the interpretation of verbal predi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 Machine Studies* 20 : 121 – 134.

Auditors' Judgment on Probability Recognition Criterion of IFRS

Noh Chang Kim* · Sung Soo Kwon** · Tae Sup Shim***

〈Abstract〉

Becaus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establishes principles rather than detailed guidances, it requires to make judgments on the probability of a transaction, for example like "probable". In these contexts, IFRS does not provide explicit practical guidances on the terminology which require judgments of probability. This could create divergent interpretations by auditors. This study researched on how the auditors make judgments on probabilistic judgmental requirements of IFRS, which affect most seriously on accounting recognition. We observed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auditors' judgments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high, low) of inspection by the regulator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 (net income, net loss) of the entit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auditors regard the possibility of contingent liabiliti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ossibility of inspection by a regulator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entity. We found that the auditors recognised (disclosed) more contingent liability when the possibility of inspection is high, while they recognised more contingent liability under net income. On the other hand, the judgment on the possibility of taxable income, which can be used in temporary differences, was not affected by the possibility of inspec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ent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FRS provide more detailed guidances on probabilistic possibility referred in IFRS. Furthermore we emphasize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accounting standards which improves consensus in judgment of auditors on 'probabilistic possibility'.

〈Key words〉 principle-based, probability recognition criterion, contingent liability, deferred tax asset

*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 Senior Director, Korea Accounting Institute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부록〉 실험 설문지*

이제부터 가상 사례가 제시됩니다.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 사례의 내용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이 실제 사례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응답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사례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A의 감사상황이 귀하께 제시됩니다. 제시되는 상황은 모두 가상 상황이며, 제시된 정보 이외의 상황이나 정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제시되는 내용만을 고려하여,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1 : 우발부채

K-IFRS 제1037호 문단27과 문단28에 의하면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으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remote) 않다면,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출가능성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K-IFRS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는 (주)C의 소송과 관련된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 우발부채는 기준서(문단 92)에서 허용하는 공시 생략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관련 금액은 감사의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주)C는 귀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고객이며 (주)C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발부채(관련 금액 및 시기)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C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익을 실현하여 왔으며 올해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하여도 회사의 재무상태나 금융기관의 평가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C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리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주)C의 감사인으로서 위의 소송과 관련된 우발부채의 자원유출가능성이 몇 % 이하가 되어야 관련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하

♥ 상황2 : 이연법인세

K-IFRS 제1012호 문단24에 의하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과세소득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K-IFRS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는 (주)D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판단하여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 금액은 감사의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주)D는 귀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고객이며 해당 항목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D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익을 실현하여 왔으며 올해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자산과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그대로 반영될 상황입니다. 다만, (주)D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리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주)D의 감사인으로서 위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몇 % 이상은 되어야 이익과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상

*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는 실험집단 G12(기업성과 : 당기순이익, 감리가능성 : 낮음)의 예시이며, 실제 사용된 설문지의 주요 부분만을 첨부하였다.